

담당	책임자

기업형IRP가입대상 근로자 확인서

년 월 일

1. 기업정보

기업명		사업자 번호	
-----	--	--------	--

2. 가입대상 근로자 확인

가입대상 근로자 구분	근로자 수(명)
(A) 상시근로자 수	명
(B) 퇴직급여제도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(임시직, 일용직, 개인사업자 등) 수	명
(C)=(A)-(B) 기업형IRP 가입대상 근로자 수	명

[유의사항]

- 1) 추가 입사한 근로자는 기업형IRP 가입대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 가입
- 2)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
- 3)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
- 4) 기업형IRP 설정 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

[참고]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(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)

-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.
 1.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. 다만,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
 2.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
 3.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
 4.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.
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 5.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지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당사는 기업형IRP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 전/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불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상 근로자 전원(또는 일부) 가입합니다.

※ 불임 :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건강보험 고지대상자확인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임금대장 중 하나이상)

기업명 : 서명 또는 (인)

